

## 빗썸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

회사는 하기와 같은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한다.

- ① 회사는 가상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가상자산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준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가상자산이 정부 기관의 규제 및 법령에 위배되거나 형사사건과의 연관, 혹은 해킹 및 보안 이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
  4.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한 부당거래 행위, 혹은 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경우
  5. 가상자산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사업 진행이 미진한 경우
  6.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과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7. 가상자산이 특별히 보안성이 취약한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
  8. 커뮤니티 비활성화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9. 재단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으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의 시세에 영향을 주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10. 재단의 토큰 발행량 및 유통량을 포함한 토큰 유통 계획, 고유 기술의 변경, 로드맵, 사업적 변동 등의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11. 또는 상기 각 항목 사유와 유사하거나 가상자산이 거래소의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성 등에 관하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전문가집단의 자문 결과를 투자유의종목 지정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가상자산이 투자유의종목으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재단에게 통보하고 가상자산명, 선정 일시를 거래소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공지한 날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당해 가상자산에 대한 재단의 소명, 계획 등을 검토하고 종목에 대한 해지 혹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단의 소명 및 계획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